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제외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2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제외	2

I. 개요

1.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2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3. 7.
- (3) 회 부 일 : 2025. 3.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은 제외하지 않고 있음.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따른 것이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제1항제4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안정적인 생활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5항 신설),

소득인정액 산정 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안정적인 생활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u>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 3. (생략)

4. 이전소득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이전소득. 다만, 다음 각 목
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

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

② · ③ (생 략)	<u>한 특별법」에 따른 보상</u> <u>금 및 지원금</u> <u>라. 그 밖에 국가에 의한 폭</u> <u>력이나 기본권 제한에 따</u> <u>른 보상금 및 지원금으로</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소득</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동법 제2조제9호¹⁾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동법 제6조의3²⁾에 따라 소득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5조³⁾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 >

소득 인정액	구분	산식
	소득평가액 (제6조의3제1항)	<u>실제소득</u> -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유인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u>이전소득</u>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6조의3제2항)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생략)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15 참고자료1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은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발생하므로,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짐에 따라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⁴⁾할 수 있음.

<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 >⁵⁾

구분		대상자 기준	지급금액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제5조)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월급여×호프만계수 ⁶⁾)+이자
		상이자, 성폭력피해자	[(월급여×노동상실률×호프만계수)+요양손실액]+이자
	의료지원금 (제6조)	상이자, 성폭력피해자	※ 시행령 제13조에 근거 ①향후 치료비 :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해 산정한 금액 ②간병비 : 지정병원 등의 진단서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월 19만원에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③보장구 구입비 : 지정병원 등의 진단서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구입 횟수에 구입시기를 곱한 금액~
	생활지원금 (제7조)	생활 보조가 필요한 자	※ 시행령 제14조에 근거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 1~7차 보상 총 5,807건*, 약 2,511억 지급(약 4,324만 원/건)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분류 심사 등을 포함하여 보상 지급결정 건수로 관리 ※ 현재 8차 보상 진행 중(25.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보상금 (제16조)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9천만원
		후유장애 희생자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 결정
		수형인 희생자	① 수형 또는 구금 :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 결정 ②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 4.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 결정

4)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할수록 수급액이 감소함.

5) 개별 규정은 p.17 참고자료2 참조.

	의료지원금 (제19조)	희생자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	※ 시행령 제15조에 근거 (①향후 치료비 :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해 산정한 금액 ②간호비 : 월 56만 2천원 ③보조장구 구입비 :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생활지원금 (제19조)	희생자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	※ 시행령 제16조에 근거 (중위소득의 100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결정)
	- 6,037명에 대해 5,220억원 지급 결정('24.12.31.기준) ※ 현재 8차 희생자·유족 신고접수('23.1.1.~'23.6.30.)에 따른 결정 및 6차 보상금 신청 접수 중('25.1.1.~'26.12.3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료지원금 (제14조)	희생자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	※ 시행령 제15조에 근거 (①향후 치료비 :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해 산정한 금액 ②간호비 : 월 56만 2천원 ③보조장구 구입비 :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생활지원금 (제14조)	희생자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	※ 시행령 제16조에 근거 (중위소득의 100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결정)

□ 이에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지원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피해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배상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목적 및 성격상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6) 호프만계수란 단리계산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법원의 소송판결 지급기준 등에서 이용하고 있음.

것은 그만큼 생계급여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결국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생계급여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안정적인 생활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⁷⁾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해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예우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⁸⁾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보상금 및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생활지원금의 성격이 생계급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⁹⁾에 따른 보상금이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의료지원금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역시 시행령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의료지원금 관련 규정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향후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희생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56만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향후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희생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56만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결국,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문제가 되는데,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법상 생계급여와 그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생계급여와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우선하는 보충성의 원칙¹⁰⁾에 기반하여 일부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생활지원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호¹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생활조정수당¹²⁾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러한 생활조정수당은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생계급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전부터 해당 수당을 지급받아 온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즉, 생활지원금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배상으로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피해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반면,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생활조정수당은 생계보호라는 목적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부터 수당을 통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온 제도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¹³⁾에서도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안정적 생활 보장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타당한 점이 있으나,

1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부양가족이 없고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재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의 일부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는 지적¹⁴⁾이 있는데, 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을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일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¹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0조¹⁶⁾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준 중위

14) 이와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에서 보훈급여를 제외하는 취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김도읍의원안 2200697, 주호영의원안 2200741, 김남희의원안 2202122, 허영의원안 2202383, 김소희의원안 2207825)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급여의 기준 및 내용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17)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상의 소득인정액에서 보훈급여를 제외하는 취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¹⁸⁾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③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 차관 4. 고용노동부 차관 5. 국토교통부 제1차관

18) 김도읍의원안 2200697, 주호영의원안 2200741, 김남희의원안 2202122, 허영의원안 2202383, 김소희의원안 2207825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 및 타 공적이전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은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 및 자활을 돕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기획재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소득·재산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생계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이에 따라, 기초연금, 공적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은 원칙상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고,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인정액 제외 시 타 공적 급여 수급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

- (기초지자체*) 정기적인 보상금 및 지원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일시적인 지원금 및 보상금 또한 재산에서 제외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1】	소득평가액 산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2. 사업소득
 -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한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9.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
 - 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0.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2.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참고2】	개별 법률 규정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일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 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

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